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5 년 12 월 09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주식회사 이가자산운용
(영문명) EGA Asset Management Co.,Ltd
(홈페이지) [http:// www.egaasset.com](http://www.egaasset.com)

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, 6층(대치동, 새마을운동중앙회 빌딩)
(전 화) 02-561-9540

대 표 이 사 : 이정우, 이영철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준법감시인
(성 명) 한승규 (전 화) 02-6951-2946

작 성 자 : (직 책) 실 장
(성 명) 심재식 (전 화) 02-6951-3094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붙임>

기관경고 등 문책사실 공시

※ 당사 및 당사의 前상무(송태진)는 금융감독원이 2024.02.19.부터 2024.03.13.까지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각각 기관경고, 주의상당의 문책을 조치요구 받았음.

1. 검사 결과, 조치요구사항 일람표

구 분		제 목	비 고 (위반내역)
지적 사항	문책 사항	◦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	「지배구조법」 제10조 제1항
		◦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	「자본시장법」 제34조 제2항
		◦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	「자본시장법」 제84조 제1항
		◦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	「자본시장법」 제418조 등
		◦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절차 위반 등	「지배구조법」 제28조 제2항 등

2. 금융감독원, 문책 관련 대상자 명세

- (주)이가자산운용: 기관경고
- 前상무 송태진: 주의상당(퇴직자, 위법·부당사항)

※ 당사 및 대표이사, 前상무에 대한
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융위원회로 건의하여 既 행정처분 집행 畢